

추가약정서(기업용)

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앞

20 년 월 일

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(이하 "HSBC 은행")과 [](이하 "채무자") 간에 ()년
()월 ()일에 체결된 []약정](이하 "약정")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을
체결합니다.

제 1 조 확약사항

채무자는 여신 제공 기간 동안 아래의 확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(해당되는 것만 기재할 것)

- 부채비율(부채총계 / 유형순자본(자본총계 - 무형자산총계))이 ()를 넘지 않도록 한다.
- 레버리지비율[((부채총계-현금)/예금잔액) / 법인세, 이자 및 상각비용 차감전 이익]이
()를 넘지 않도록 한다.
- 법인세, 이자 및 상각비용 차감전 이익이 ()원 이상이어야 한다.
- 이자보상배율(법인세 및 이자비용 차감전 이익 / 금융비용)이 ()원 이상이어야 한다.
- 연결재무제표의 유형순자본(자본총계 - 무형자산총계)이 ()원을 초과해야 한다.
- 부채상환계수(법인세, 이자 및 상각비용 차감전 이익 / 원리금)가 ()를 초과해야 한다.
- 유동비율이 () 이상이어야 한다.
- 현금보유금액을 ()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.
- _____의 지분율을 ()% 이상 유지해야 한다.
- 국제신용등급을 S&P: (), Moody's: ()이상 유지해야 한다.
- HSBC 은행이 제공한 여신이 방위산업이나 핵무기산업에 절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.
- 기타 HSBC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확약사항

제 2 조 담보제공

상기 약정에 따라 여신이 제공되기 위하여 채무자는 아래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. (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여신의 경우 기재할 것)

[

]

제 3 조 통지 의무

홍콩의 은행업조례 (Banking (Exposure Limits) Rules (Cap. 155S))에 따라 HSBC 는 HSBC 그룹의 이사 또는 직원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대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본 약정 체결시에 채무자는 동 은행업조례에서 의미하는 HSBC 그룹의 이사 또는 직원과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HSBC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러한 통보가 없을 시 HSBC 은행은 채무자가 HSBC 그룹의 이사 또는 직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간주하게 됩니다. 만약, 본 약정 체결 이후에 채무자가 HSBC 그룹의 이사 또는 직원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즉시 HSBC 은행에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. 동 조례에서 의미하는 HSBC 그룹의 이사 또는 직원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 및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(i) HSBC 그룹 계열사의 이사, 직원, 통제권자, 소수주주 통제권자
- (ii) HSBC 그룹 계열사의 이사, 직원, 통제권자, 소수주주 통제권자의 친인척
- (iii) HSBC 그룹 계열사 또는 다음 기관 중 어느하나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, 파트너, 관리자 또는 대리인으로 있는 회사, 합자회사 또는 비상장 회사
 - (a) HSBC 그룹 계열사의 통제권자, 소수주주 통제권자 또는 이사
 - (b) HSBC 그룹 계열사의 통제권자, 소수주주 통제권자 또는 이사의 친인척
- (iv) HSBC 그룹 계열사가 대출을 제공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해당 대출의 보증인인 자연인, 회사, 합자회사 또는 비상장 회사
 - (a) HSBC 그룹 계열사의 통제권자, 소수주주 통제권자 또는 이사
 - (b) HSBC 그룹 계열사의 통제권자, 소수주주 통제권자 또는 이사의 친인척

본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1) "통제권"을 가진 자란 다음을 의미합니다.
 - (A) 간접 통제권자, 즉, 회사와 관련하여, 그 회사 또는 그 회사가 자회사인 다른 회사의 이사에게 지시하여 행동하게 하는 자, 또는
 - (B) 대주주 통제권자, 즉, 회사와 관련하여,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해당 회사 또는 동 회사의 자회사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50 %를 초과하여 행사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자, 그리고 "통제권자"란 "간접 통제권자" 또는 "대주주 통제권자"를 의미합니다

- 2) "직원"에는 정규 풀타임 직원, 정규 파트타임 직원, 기간제 파트타임 직원 그리고 해외파견직원이 포함됩니다.
- 3) 회사와 관련하여 "소수주주 통제권자"란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해당 회사 또는 동회사의 자회사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% 이상, 50 % 이하를 행사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.
- 4) 자연인과 관련하여 "친인척"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.
 - (A) 부모,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
 - (B) 의붓 부모 또는 양부모
 - (C) 형제 또는 자매
 - (D) 배우자
 - (E) 해당 자연인이 동거(concubinage)관계의 당사자인 경우, 그 동거관계의 상대방
 - (F) 공동 거주자
 - (G) 배우자의 부모, 의붓 부모 또는 양부모
 - (H)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
 - (I) 아들, 의붓 아들, 입양된 아들, 딸, 의붓 딸 또는 입양된 딸
 - (J) 손자, 손녀, 증손자 또는 증손녀.
- 5) "HSBC 그룹"이란 HSBC Holdings plc, HSBC Holdings plc의 자회사, 관계법인, 관련 회사 그리고 이들의 지점을 의미하며, HSBC 그룹의 계열사 또는 사무소는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.

제 4 조 양도

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, HSBC 은행은 필요한 경우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채무자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제 3자에게 해당 여신과 관련하여 HSBC 은행이 보유한 권리, 권한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시설자금대출 (시설자금대출인 경우 아래에 표시할 것)

본 여신이 시설자금대출인 경우, HSBC 은행은 시설자금을 시설공급업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며 채무자는 이에 동의합니다.

제 6 조 뇌물수수 및 부정부패 방지 관련 진술, 보장

채무자는, 본인 및 본인이 알고 있는 한 그 계열사가, 업무수행 과정에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21 조에서 언급된 뇌물수수 및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내규 및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, 위 추가약정서 내용을 확약합니다.

성명	(인 또는 서명)
주소	